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3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5.

발 의 자 : 이주희 · 허성무 · 정태호
김남근 · 이강일 · 임미애
이연희 · 강득구 · 김우영
손 솔 · 김한규 · 이수진
박균택 · 조승래 · 이광희
노종면 · 오세희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2026년 기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, 이 중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.

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

· 고시된 출자·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,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4제4항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제4항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공공기관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·출연 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4(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 자지원센터등의 설치·운영)	제7조의4(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 자지원센터등의 설치·운영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·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· 운영을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<u>공 공기관</u>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 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 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 공기관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 된 출자·출연 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